

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·공고

태권도진흥재단·전라북도·무주군에서 시행하는 태권도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「같은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재결신청서 등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9. 12. 4.

무 주 군



1. 사업개요

가. 사업명 : 태권도공원조성사업

나. 시행자 : 태권도진흥재단·전라북도·무주군

다. 수용할 토지 등의 내역

1) 토지목록

소재지	지번	지목		면적 (㎡)	산정액	소유자		관계인			
		공부	현실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종류	
				따	로		불	임			

2) 물건목록

소재지	지번	지목	물건의 종류	구조 및 규격	수량	금액	소유자		관계인			
	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의 종류	
				따		로		불	임			

2. 재결신청서 열람 및 의견서 제출

가. 열람기간 : 2009. 12. 4(금) ~ 2009. 12. 21(월)

나. 열람 장소 : 무주군청 태권도공원과

다. 의견제출

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토지 및 물건 수용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열람기간 내에 무주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제출처 :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29-2번지 무주군청 태권도공원과)

3. 기타 문의사항

보상관련 문의사항은 사업시행자 무주군청(태권도공원과 공원개발담당 ☎063-320-2156, 320-2157)으로 문의바랍니다.